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5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0년 10월 25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 종 철

###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 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계획에 의거 부패에 연루된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여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정비함으로서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1) 안 제20조(해촉)에서 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해촉하도록 규정

(2) 안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에서 2008. 1. 18일 법률 제8655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관련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을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으로 함으로써 “가정”을 “가족”으로 명칭 변경

(3)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적절한 용어로 정리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 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부패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